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4,647,480	20,539,424
일반회계	598,807,936	17,964,238
특별회계	85,839,544	2,575,186
공기업특별회계	67,688,439	2,030,653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4,986,740	749,602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2,701,699	1,281,051
기타특별회계	18,151,105	544,533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31,165	12,935
의료급여특별회계	2,531,172	75,93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71,491	23,145
수질개선특별회계	2,599,933	77,998
농공단지특별회계	8,848,573	265,457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960	41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51,884	4,55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500,952	45,029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28,507	855
주택사업특별회계	735,068	22,052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87,900	11,637
토지관리특별회계	150,500	4,51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 략(채무부담)

제 4 조 생 략(계 속 비)

제 5 조 생 략(명시이월)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18,57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